



사 단 「정책선도와 병원 선진화로 의료강국 실현」
범 인 대 한 병 원 협 회

수 신 전국 병원장

참 조 보험(원무)부서장, 약제부서장

제 목 의약품 병용금지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(병용금지 성분 추가)
및 일정 안내

1. 관련근거 :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-3670(2014.9.26)

2. 위 근거와 관련, 보건복지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행정예고

(8.27~9.17)한 「의약품 병용금지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」이 금주 중 개정 예정임
과 동 고시 개정으로 추가되는 성분의 해당 약제에 대한 급여기준 적용이 식품의약품안
전처 고시 시행일 다음날부터임을 알려왔기에 안내하오니 전산시스템 개편 등 필요한
조치를 취하여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.

※ 붙임 : 의약품 병용금지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(붙임자료는 본회 홈
페이지(www.kha.or.kr) / 협회업무 / 보험국 /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가능). 끝.

대 한 병 원 협 회 장



대리 유소영 팀장 정윤학 국장 류항수

시행 : 보험 제 2014-490 (2014.09.29)

우 121-737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15(마포동 35-1) 현대빌딩13~15층 대한병원협회 / 홈페이지 : www.kha.or.kr

전화 02-705-9254 전송 02-705-9259 (대표FAX : 02-705-9209) E-mail : ysy@kha.or.kr